

제1999호  
2026. 5. 7.(목)

발행인: 동 작 구 청 장 박 일 하  
편집인: 홍 보 담 당 관 김 기 택

|        |       |
|--------|-------|
| 선<br>람 | 기관의 장 |
|        |       |

전 화 : 820-1042  
F A X : 828-4305

# 동 작 구 보

차 려

## ◎ 조 려

|                                                          |    |
|----------------------------------------------------------|----|
| 제2032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               | 1  |
| 제2033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 2  |
| 제2034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 3  |
| 제2035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 4  |
| 제2036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       | 5  |
| 제2037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 조례 .....                 | 6  |
| 제2038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                   | 8  |
| 제2039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 15 |
| 제2040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 16 |
| 제2041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 17 |
| 제2042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 18 |
| 제2043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                | 21 |
| 제2044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      | 23 |

## ◎ 고 시

|                                                      |    |
|------------------------------------------------------|----|
| 제2026-70호: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 | 32 |
|------------------------------------------------------|----|

제2026-73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 53

◎ 공 고

제2026-909호: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부촉구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 54

제2026-910호: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 56

제2026-913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 57

제2026-915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58

제2026-916호: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공시송달 공고 ..... 64

제2026-933호: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및 의견청취 공고 67

◎ 인사발령 ..... 69

|        |  |  |  |  |  |  |  |  |  |  |  |  |  |  |
|--------|--|--|--|--|--|--|--|--|--|--|--|--|--|--|
| 공<br>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구(區)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구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동작구**

## 조 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2032호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5월 7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의 사용을 신청하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제24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⑮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신검진 동행휴가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남성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한 특별휴가 일수는 제24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임신검진 동행휴가 일수에서 뺀다.

1. 이 조례 시행 전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15항에 따라 특별휴가를 사용한 남성공무원으로서 이 조례 시행 당시 그 배우자가 임신기간 중에 있는 남성공무원

2.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15항에 따라 특별휴가를 사용 중인 남성공무원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 □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개정(25.7.22. 시행)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사용 신청 시 허가 의무 신설(제24조제5항)  
나. 배우자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공무원의 10일 범위 내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제24조제7항)

◆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2033호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5월 7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제6조제3항”을 “한다) 제6조제3항”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직의 재임기간에 한한다”를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3분의1”을 “3분의 1”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원장의 위탁계약 가능 기간이 정부의 보조금 지급 상한 연령으로부터 5년 미만인 경우

2. 임대차계약의 잔여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제19조제1항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중 “별표1”을 “별표 1”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 이용료를 일부 또는 전액을 면제”를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1”을 “별표 1”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반환하고자”를 “반환받고자”로, “서식에 의거”를 “서식의”로 한다.

제25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부한”을 “지급한”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 개정이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2025. 11. 24.)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위탁기간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의 5년 규정을 일정한 사유 있을 시 5년 미만도 가능하도록 규정(제14조)

나. 사용료 반환 규정의 인용조문 오류 수정(제22조의2제4항)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및 띄어쓰기 정비

## ◆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2034호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5월 7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내에서 출생한 요보호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입양을 활성화 하고”를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으로, “복지를 증진하는”을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으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요보호아동”이란”을 ““보호대상아동”이란”으로, “보호대상아동”을 “아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요보호아동”을 “보호대상아동”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입양부모의”를 “보호대상아동의”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삭제한다.

2. “입양아동”이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제3조제2항 중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입양가정”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요보호아동”을 “보호대상아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입양아동”을 “입양아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6조 중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를 “동작구”로, “신청일 까지”를 “신청일까지”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 개정이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전면 개정에 따른 관련 용어 개정을 통해 입양가정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자 함.

## □ 주요내용

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제1조~제6조)

나. 공적 입양체계 시행에 따라 입양기관 내용 삭제(제2조, 제5조)

## ◆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2035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5월 7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조기 사회복귀를 위한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동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 개정이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회복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문을 명확히 규정하여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조기 사회복귀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 □ 주요내용

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신설(제6조제1항제6호)

나.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기관·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제8조)

## ◆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2036호

## 서울특별시 동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5월 7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경우”를 “경우 화재 및 사고 등 이동장치 이용 관련”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안전문화 조성 등)”을 “(홍보 및 안전문화 조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충전 및 이용문화 조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화재 예방 대책 마련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동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 □ 개정이유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충전 과정에서의 폭발 및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충전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내용을 홍보하고,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화재 예방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화재 예방을 강화하고 국민의 재산권과 생명권을 보호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교육의 내용을 화재 및 사고 예방 등을 포함하도록 구체화함(제7조)
- 나.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충전 및 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에 관하여 규정함(제8조)
- 다.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화재 예방 대책 마련을 추가함(제9조)

## ◆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2037호

##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5월 7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 및 제31조의2에 따라 가스안전사고로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등의 보호를 위해 가스타이머 콕 보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스타이머 콕”이란 가스레인지 등 연소기 과열로 인한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가스타이머 콕 설치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주민 및 구에 소재지를 둔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으로 한다.

제4조(지원내용)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스타이머 콕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가스타이머 콕 지원 신청자가 많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환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은 우선 지원한다.

③ 1세대당 1회에 한정하여 지원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단, 기존 제품의 고장·노후 등으로 사고 위험에 노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중복지원 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가스타이머 콕의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세대주 또는 세대원, 경로당 대표자가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추천할 수 있다.

제6조(지원결정 등) ①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지원신청자의 지원 적정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동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통보한다.

제7조(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및 업체에 설치를 의뢰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 신청서(제5조 관련)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              |                                                                                                                                 |       |       |                                                                   |  |  |
|--------------|---------------------------------------------------------------------------------------------------------------------------------|-------|-------|-------------------------------------------------------------------|--|--|
| 접수번호         |                                                                                                                                 | 접수 일자 |       | 20 . . .                                                          |  |  |
| 지원대상자        | 성 명<br>(시설명)                                                                                                                    |       | 가스구분  | <input type="checkbox"/> 도시가스<br><input type="checkbox"/> LPG급속배관 |  |  |
|              | 생년월일<br>(설립연도)                                                                                                                  |       | 성 별   | <input type="checkbox"/> 남<br><input type="checkbox"/> 여          |  |  |
|              | 주 소                                                                                                                             |       |       |                                                                   |  |  |
|              | 연락처                                                                                                                             |       |       |                                                                   |  |  |
| 신 청 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  |
|              | 대상자와의<br>관 계                                                                                                                    |       | 연 락 처 |                                                                   |  |  |
|              | 주 소                                                                                                                             |       |       |                                                                   |  |  |
| 지원대상<br>세대유형 | <input type="checkbox"/> 치매환자 <input type="checkbox"/> 장애인<br><input type="checkbox"/> 국민기초생활수급자 <input type="checkbox"/> 차상위계층 |       |       |                                                                   |  |  |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

|          |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신청서<br>2. 주민등록등본<br>3. 지원대상 증빙서류(장애인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 관련 본인확인                      ○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 운영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  
○ 지원대상 자격판정 자료 활용

##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성별, 기타 지원대상 유형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

##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한 해당연도로부터 3년

## ■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사업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상자)

(서명 또는 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적으로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신청인(대상자)

(서명 또는 인)

##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 조례

## □ 제정이유

어르신의 인지 기능 저하 및 기억력 감퇴로 인해 발생하는 가스레인지 부주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 가스 밸브 차단 장치인 가스타이머 콕 보급을 지원하여 동작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제1조, 제2조)
- 나. 가스타이머 콕 설치 지원대상의 조건을 규정함(제3조)
- 다. 가스타이머 콕 설치 지원내용을 규정함(제4조)
- 라. 가스타이머 콕 설치 지원신청 방법 및 최종 지원대상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제6조)

## ◆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2038호

##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5월 7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로수”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환경오염 저감과 녹음제공 등 생활·교통환경 개선, 자연생태계의 연결성 유지 등을 위하여 심는 수목으로써 도로의 도로구역 내 또는 그 주변에 심는 수목(樹木)을 말한다.
  2. “바뀌심기”란 일정 구간의 가로수 전체를 제거하고 동일한 장소에 적정 수종의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을 말한다.
  3. “매워심기”란 일정한 간격으로 심어진 가로수가 빠져 있는 곳이나 고사된 가로수를 제거하고 적정 수종으로 가로수를 심는 것을 말한다.
  4. “지주대”란 가로수를 기상에 따른 피해와 인위적인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활착율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버팀 시설물을 말한다.
  5. “보호틀”이란 가로수의 생육영역 확보와 보행자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 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6. “보호덮개”란 식수대 내 흙의 굳음을 방지하여 수분흡수, 공기순환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시설물, 나무파쇄물 또는 자갈 등을 말한다.
  7. “보호대”란 정류장·횡단보도 주변 등과 각종 건설공사로 가로수의 훼손이 예상되는 곳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 둘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8. “가로등”이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에 시설된 안전하고 원활한 야간활동을 위해 해당 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
- 제3조(가로수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가로수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 등 현저한 변경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 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2. 가로수 현황 분석

3. 지역별·노선별 가로수 기본 식재수종
4. 양질의 가로수 증진과 정비 방안
5. 연차별 가로수 관리계획에 관한 지침 등

6. 그 밖에 구청장이 가로수 조성·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가로수기본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진단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① 가로수의 수종은 가로수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동작구”이라 한다)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동작구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종
4.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탄소 흡수 등에 맞는 수종
5. 그 밖에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② 가로수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형이 정돈된 것
2. 발육이 양호할 것
3. 지엽이 치밀하게 발달되었을 것
4. 병해충의 피해가 없을 것
5. 이식 시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하였거나 완전한 단근작업 및 뿌리 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일 것
6. 재배품이 아닐 경우에는 수형, 지엽 등이 표준 이상으로 우량하고 충분한 크기의 분을 떼서 이식할 수 있을 것

제5조(식재 위치)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치에 식재한다.

1. 보도에 교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의 약해와 이동차량 등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도·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최소 1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너비 등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동에 제한이 없는 범위에서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3. 중앙분리대, 횡단보도 주변 등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제6조(식재 기준 및 시기) ① 가로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식재하여야 한다.

1. 교목의 식재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식재 간격은 6미터~8미터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위치와 주변 여건, 식재 수종의 수관폭과 생장 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나. 도로의 동일 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동일 수종으로 식재한다. 다만, 도로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확장되는 경우, 가로수기본계획 수립과 서울특별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한 것에 대해서는 동일 노선일지라도 다른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다.

2. 관목은 식재수종의 특성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식재할 수 있다.

3. 식재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목과 관목, 초본류를 다 층구조로 식재할 수 있다.

4.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려운 지역은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② 식재의 시기는 수목의 정상적인 활착이 가능한 봄철과 가을철에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7조(가지치기) ①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 도로표지 및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계 확보, 통행공간의 확보, 전선·통신시설물의 안전, 빗가림 방지 등을 위하여 가지치기를 할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지치기를 실시한다.

② 가로수 가지치기를 시행할 때에는 동작구 관계공무원의 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로수 가지치기를 제13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병해충의 방제) 구청장은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기 전에 구민에게 고지하는 등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를 입은 가로수에 대하여 가지치기·바꿔심기·메워심기 등을 통한 임업적 방제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가지와 낙엽 등은 필요한 경우 소각하여 처리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임업적 방제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약제 등을 이용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수 있다.
4. 제3호에 따른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경우 인근 구민·보행자·운전자 또는 동·식물에 대한 피해, 수계 유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토양오염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독성 약제로 필요 최소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월동 중인 유충을 잡기 위하여 짚이나 새끼 등을 가로수 줄기에 감아서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다.
6.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시에는 동작구 관계공무원의 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제업무를 제13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가로수 보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동작구 내 식재된 가로수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가로수의 관리에 필요한 지주대, 보호틀, 보호덮개, 보호대, 통기·관수시설 등의 시설 및 장비는 가로수의 생육 및 보행자의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관리해야 한다.

제10조(점검) ① 구청장은 노선별·수종별로 가로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점검대상은 바뀌심기가 필요한 가로수, 병해충의 감염여부, 메워심기가 필요한 고사목 또는 신규 식재량 및 생육상태, 식재지 토양상태 등으로 한다.

③ 정기점검은 매년 5월에 실시한다.

④ 수시점검은 병해충 확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해야 할 경우 또는 식재·메워심기·바꿔심기 등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조성·관리 협의 등) 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 등이 도로공사 또는 정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유지하여야 하며, 도로의 계획 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조성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로의 구조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가로수를 조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가로수와 상충될 수 있는 가로등 및 도로표지 등의 안전시설물을 새로 설치할 때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가로등 및 도로표지 등의 안전시설물의 기능을 저해하는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한 즉시 가지치기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로 인해 가로수의 기본 수형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가로수 관리의 구민참여 등) ① 구청장은 가로수 관리의 구민참여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2. 병해충 발생신고
3.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4.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구청장에게 신고
5. 비상재해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② 구청장은 구민들이 직접 가로수의 유지·관리에 참여할 경우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민간위탁) 구청장은 가로수의 식재 및 관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등록된 자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제14조(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행위 등(이하 “가로수 조성 및 관리”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가로수 조성 및 관리의 승인을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승인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 및 관리의 승인을 받은 자는 가로수 조성 등에 드는 비용을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15조(원인자부담금) ①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가로수의 가지치기, 제거 또는 옮겨심기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가로수의 가지치기와 옮겨심기는 구청장이 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작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 ③ 원인자부담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1. 옮겨심기의 경우는 해당 수목의 굴취, 운반, 식재비용
  2. 제거하는 경우는 해당 수목가액 및 제거비용
  3. 가지치기, 훼손 등의 경우는 소요비용
- ④ 구청장은 가로수와 가로수 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훼손자에게 제3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훼손자가 구청장과 협의하여 직접 복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6조(부담금 등의 징수) ① 구청장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정한 기간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제17조(가로수 관리대상) 구청장은 가로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산화된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한다.
-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제15조제3항 관련)

|                                                                                                                                                                                                                                                                                                                                 |                                                                                                                                                                                                                                                                                                                                                       |
|---------------------------------------------------------------------------------------------------------------------------------------------------------------------------------------------------------------------------------------------------------------------------------------------------------------------------------|-------------------------------------------------------------------------------------------------------------------------------------------------------------------------------------------------------------------------------------------------------------------------------------------------------------------------------------------------------|
| 피해발생의 경우                                                                                                                                                                                                                                                                                                                        | <p>1. <b>벌목, 수간절단 등 피해로 교체하는 경우</b><br/>⇒ 대체수목 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p> <p>2. <b>과도한 가지 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b><br/>⇒ 수목비의 20% + 실작업비<br/>※ 과도한 가지 훼손: 수관의 1/3 이상 훼손</p> <p>3. <b>경미한 가지 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b><br/>⇒ 수목비의 10% + 실작업비</p>                                                                                                              |
| 피해이외의 원인발생의 이유                                                                                                                                                                                                                                                                                                                  | <p>4. <b>이식하는 경우</b><br/>가.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이식을 하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 및 감독<br/>⇒ 이식에 따른 도급공사설계비 (세입세출외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예치)<br/>※ 구청장의 지시 위반시 피해발생의 경우 적용 조치<br/>나. 구청장이 이식하는 경우<br/>⇒ 이식에 따른 도급공사설계비 + 이식비</p> <p>5. <b>제거하는 경우</b><br/>가.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제거하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 및 감독<br/>⇒ 대체수목 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br/>나. 구청장이 제거하는 경우<br/>⇒ 대체수목 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 제거비</p> |
| <p>※ 비 고</p> <p>1. 도급공사설계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 적용(재료비 + 노무비 + 제경비)하여 산정</p> <p>2. 수 목 비: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시가를 적용하여 산정</p> <p>3.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보증보험증권이나 수목이 고사했을 경우를 고려한 도급공사설계비를 현금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예치</p> <p>4.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 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 받은 보증금을 환불</p> |                                                                                                                                                                                                                                                                                                                                                       |

[별지 제1호 서식]

|                                                                                                                                                                                                                                                                   |         |                         |    |                            |     |   |
|-------------------------------------------------------------------------------------------------------------------------------------------------------------------------------------------------------------------------------------------------------------------|---------|-------------------------|----|----------------------------|-----|---|
|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가로수</div> <div> <input type="checkbox"/> 심고 가꾸기<br/> <input type="checkbox"/> 옮겨심기<br/> <input type="checkbox"/> 제 거<br/> <input type="checkbox"/> 가지치기         </div> <div>승인 신청서</div> </div> |         |                         |    |                            |     |   |
| 신청인                                                                                                                                                                                                                                                               | 성명(상호)  |                         |    | 생년월일<br>(사업자등록번호)          |     |   |
|                                                                                                                                                                                                                                                                   | 주소(소재지) |                         |    |                            | 연락처 |   |
| 사업대상                                                                                                                                                                                                                                                              | 가로수 위치  |                         |    |                            |     |   |
|                                                                                                                                                                                                                                                                   | 수종      |                         | 규격 | 수고 :<br>가슴높이지름 :<br>근원지름 : | 수량  | 본 |
|                                                                                                                                                                                                                                                                   | 기타      |                         |    |                            |     |   |
| 사유                                                                                                                                                                                                                                                                |         |                         |    |                            |     |   |
| 작업방법                                                                                                                                                                                                                                                              |         |                         |    |                            |     |   |
| 작업기간                                                                                                                                                                                                                                                              |         | 년 월 일부터<br>년 월 일까지( 일간) |    |                            |     |   |
|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br><div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br/>           신청인 (인)<br/> <b>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b> </div>                                                                                                |         |                         |    |                            |     |   |
|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치도 1부    3. 현황도면 1부<br>4. 관련 인·허가 서류 사본 1부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                                                                                                                                                                                                                                   |         |                         |    |                                                                                                                                   |  |     |   |
|-----------------------------------------------------------------------------------------------------------------------------------------------------------------------------------------------------------------------------------|---------|-------------------------|----|-----------------------------------------------------------------------------------------------------------------------------------|--|-----|---|
|                                                                                                                                                                                                                                   |         | 가로수                     |    | <input type="checkbox"/> 심고 가꾸기<br><input type="checkbox"/> 옮겨심기<br><input type="checkbox"/> 제 거<br><input type="checkbox"/> 가지치기 |  | 승인서 |   |
| 신청인                                                                                                                                                                                                                               | 성명(상호)  |                         |    | 생년월일<br>(사업자등록번호)                                                                                                                 |  |     |   |
|                                                                                                                                                                                                                                   | 주소(소재지) |                         |    |                                                                                                                                   |  | 연락처 |   |
| 사업대상                                                                                                                                                                                                                              | 가로수 위치  |                         |    |                                                                                                                                   |  |     |   |
|                                                                                                                                                                                                                                   | 수종      |                         | 규격 | 수고 :<br>가슴높이지름 :<br>근원지름 :                                                                                                        |  | 수량  | 본 |
| 사유                                                                                                                                                                                                                                |         |                         |    |                                                                                                                                   |  |     |   |
| 작업방법                                                                                                                                                                                                                              |         |                         |    |                                                                                                                                   |  |     |   |
| 작업기간                                                                                                                                                                                                                              |         | 년 월 일부터<br>년 월 일까지( 일간) |    |                                                                                                                                   |  |     |   |
| 승인조건                                                                                                                                                                                                                              |         |                         |    |                                                                                                                                   |  |     |   |
| 부담금                                                                                                                                                                                                                               | 금액      | 금 원정(W )                |    |                                                                                                                                   |  |     |   |
|                                                                                                                                                                                                                                   | 납부기간    |                         |    |                                                                                                                                   |  |     |   |
|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br><div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span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2px;">직인</span> </div>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 □ 개정이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로수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동작구 도시녹화 및 경관 향상과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하여 규정(제1조 및 제2조)
- 나. 가로수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규정(제3조)
- 다. 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에 관하여 규정(제4조)
- 라. 가로수 식재 위치, 기준 및 시기 규정(제5조~제6조)
- 마. 가로수 가지치기 및 병충해 방제 규정(제7조~제8조)
- 바. 가로수 보호 및 관리, 점검에 관하여 규정(제9조~제10조)
- 사. 가로수 조성·관리 협의 등에 관하여 규정(제11조)
- 아. 가로수 관리에 대한 구민참여 등에 관하여 규정(제12조)
- 자. 가로수 식재 및 관리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규정(제13조)
- 차. 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에 대하여 규정(제14조)
- 카. 원인자부담금 및 부담금 등의 징수 규정(제15조~제16조)
- 타.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를 위한 관리대장 구비 규정(제17조)

## ◆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2039호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5월 7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20명”을 “3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구의원”을 “구의원 2명”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 개정이유

통합돌봄은 보건·의료·복지·주거 등 다양한 분야의 연계 및 협력이 필수로 요구되는바, 분야별 전문가 참여 폭을 넓히고자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원의 수를 확대하고 구의원의 수를 2명으로 규정함으로써 협의체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증대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위원 수 확대(제13조제1항)
- 나. 통합지원협의체 위원 중 구의원을 2명으로 규정(제13조제4항)

## ◆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2040호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5월 7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동작구”를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로 한다.

제4장의 제목 “활동지원급여 지원 등”을 “장애인활동 지원”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사람은 활동지원기관에 등록하여야 하며, 활동지원사업 교육기관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다.

제18조 앞의 “제5장 장애인 직업재활자립 지원”을 삭제한다.

제22조 앞의 “제6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22조를 삭제하고,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하며, 제21조 전단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를 “구”로 하고,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처우개선사업 등) 구청장은 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활동지원인력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2. 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사업
3. 활동지원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그 밖에 활동지원인력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근속장려수당 지원 등) ① 구청장은 활동지원인력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경우 그 대상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신청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2. 동작구 소재 활동지원기관에 1년 이상 근무하는 자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속장려수당 지원에 관한 기준과 방법 등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장애인 직업재활자립 지원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 개정이유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활동지원인력의 등록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사업 및 근속장려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활동지원인력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동작구 장애인의 자립 생활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활동지원인력의 활동지원기관 등록 및 교육 이수 의무화 및 결격사유 명시(제16조제1항 및 제2항)
- 나.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 사업 추진 근거 마련(제17조)
- 다. 근속장려수당 지원 규정 신설(제18조)

#### ◆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2041호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5월 7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앞의 “제7장 보 칙”을 삭제한다.

제35조를 삭제하고, 제33조 및 제34조를 각각 제35조 및 제36조로 하며, 제31조 및 제32조를 각각 제33조 및 제34조로 하고, 제31조 및 제3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장애인단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위해 납부한 장애 정도 심사용진단서 발급비와 검사비(이하 “장애인단비 등”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장애인단비 등의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단비등의 지원에 관한 기준과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장애인단비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장애 정도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2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와 함께 주소지 관 할 동 주민센터의 장애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장애인단비 등 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단비 등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장애 정도 심사 결과 장애 미해당으로 결정된 경우
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3. 법 제84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위해 검사 및 진단을 받은 경우  
 4.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장애 정도의 조정신청을 위해 검사 및 진단을 받은 경우  
 제35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보 칙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장애인진단비 등 지원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장애 정도 결정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 개정이유

장애인 등록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단서 발급비와 검사비 등 경제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 등록 예정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동작구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장애 정도 심사를 위한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근거 신설(제31조제1항)  
 나. 장애인진단비 등의 지원 대상 및 신청 기간 등 세부 요건 규정(제31조제2항 및 제4항)  
 다. 장애 미해당 및 타 법령 중복 지원 등 지원 제외 대상 및 기준 명시(제32조)

### ◆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2042호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5월 7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영유아”를 “아동”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영유아들”을 “아동”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4. “서울형 키즈카페”란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놀이기구와 그 부속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중 “영유아가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자율적”을 “아동을 위한 자기주도적”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중 “영유아를”을 “아동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서울형 키즈카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놀이시설”을 “놀이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전단 중 “영유아”를 “아

동”으로 한다.

1. 아동 및 그 보호자, 단 지역 수요 및 특성, 공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놀이터별로 이용연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제8조제1호 중 “영유아”를 “아동”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놀이시설”을 각각 “놀이터”로 한다.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놀이시설”을 각각 “놀이터”로 한다.

제14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놀이터를 운영 및 관리할 때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및 구청장과 체결한 위·수탁 계약서의 내용 등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② 수탁자가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구청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수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재계약 없이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과 장비 및 물품을 구청장에게 반환해야 한다.

제15조를 제18조로 하고,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지도·점검 등)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정기적으로 놀이터의 운영 현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 서류나 시설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의 지도·점검 계획 및 결과에 따라야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위탁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가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수탁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수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8조를 삭제한다.

별표 1. 이용료 징수 기준 및 별표 2. 이용료 감면 기준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이용료 징수 기준(제7조제1항 관련)

| 시 설           | 이용대상 | 이 용 료  | 비 고                                                |
|---------------|------|--------|----------------------------------------------------|
|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 | 아동   | 2,000원 | · 1명당 이용금액<br>· 1회 이용시간: 2시간<br>(2시간 미만은 2시간으로 간주) |
|               | 보호자  | 무료     |                                                    |

※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를 이용하는 영유아는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별표 2]

이용료 감면 기준(제7조제2항 관련)

| 시설            | 감면기준  | 대 상                                                                                                                                                                                                                                                                                                                                                                                                                                                                                                                                                                                                                                                                           | 비고                                 |
|---------------|-------|-------------------------------------------------------------------------------------------------------------------------------------------------------------------------------------------------------------------------------------------------------------------------------------------------------------------------------------------------------------------------------------------------------------------------------------------------------------------------------------------------------------------------------------------------------------------------------------------------------------------------------------------------------------------------------|------------------------------------|
|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 | 전액 감면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br>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br>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그 보호자<br>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br>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br>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br>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br>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br>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br>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br>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br>12.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족<br>13. 「서울특별시 동작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 가족 | 관련 증명서 지참<br>(복자카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이유**

「아동복지법」 및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등 상위 법령의 기준을 반영하여 공공형 실내 놀이터의 이용 대상을 기존 '영유아'에서 '아동'으로 확대함으로써 아동의 놀이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서울형 키즈카페'의 정의와 세부 운영 지침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시설 운영의 내실을 기하며, 공공형 실내 놀이터의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조문 내 용어를 통일성 있게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이용대상 확대 및 용어의 정의 신설(제1조 및 제2조)
- 나.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지침 근거 마련(제3조)
- 다. 이용대상 규정 정비 및 탄력적 운영 근거 마련(제4조)
- 라. 조문 내 용어 일괄 정비(제4조, 제10조, 제11조 등)
- 마. 수탁자의 의무 신설(제14조)
- 바. 지도·점검 권한 및 조치 근거 신설(제15조)
- 사. 위탁의 해지 사유 신설(제16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2043호**

## 서울특별시 동작구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5월 7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에 따라 이주배경청소년의 한국 사회 정착과 적응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이주배경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 나.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5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이주배경청소년 학습·심리·진로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관련 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지원사업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구청장이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이주배경청소년 지원방안 마련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이주배경청소년의 지역사회 정착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 및 취업을 위한 정보 제공
2. 이주배경청소년의 한국어교육 및 사회 적응 프로그램 지원
3. 이주배경청소년의 심리·정서 적응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지원
4. 이주배경청소년과 그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5.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민간지원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 및 민간지원단체에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동작구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 □ 제정이유

이주배경청소년(다문화가정 청소년, 외국인 주민 자녀, 중도입국청소년, 탈북청소년)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 및 다문화감수성 등의 부족으로, 학교와 사회에서 많은 이주배경청소년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이들에 대한 관련 지원사업을 구체화함으로써 이주배경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하고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목적과 정의를 규정(제1조 및 제2조)
- 나. 구청장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제3조 및 제4조)
- 다.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5조)
- 라.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제6조)
- 마. 지원사업과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제7조 및 제8조)
- 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9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2044호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5월 7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및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 분야에 관한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등에 대한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가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비용을 말한다.
3. “의원정책개발비”란 정책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① 연구단체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3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의원은 2개 이하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연구단체에는 대표자 1명을 두며, 대표자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및 존속기한)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는 매년 3월 말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라 의원의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연도에는 8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의원의 임기만료 6개월 이내에는 구성·등록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접수되면 제5조에 따른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의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연구단체 존속기한은 의원연구단체 등록일(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의원연구단체의 등록을 심의·의결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제5조(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중 3명 이내
2. 지방의원을 역임하였거나 지방의회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등 예산 및 정책연구 분야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지방자치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연구단체 업무를 담당하는 의회사무국 소속 팀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활동 계획·변경 등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승인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①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촉된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② 위원이 해촉되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연구단체의 변동 및 등록취소) ① 연구단체 소속 의원에 변동이 있는 경우 연구단체 대표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단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연구활동비 지원) 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동경비의 10%의 범위에서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연구단체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연 2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연구활동비 지원 금액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연구주제 수행의 목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수집비 및 여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간담회,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 관련 경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

③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를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연구단체가 제3항을 위반하거나 연구단체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의장은 연구활동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2조(의원정책개발비 지원) ① 의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단체의 연구용역을 위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정책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3조(연구활동계획의 변경) ① 연구단체가 이미 승인받은 연구활동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의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연구활동 결과보고 및 공개) ①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는 정책연구용역 보고서와 예산 집행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정책연구용역 보고서는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연구활동 결과물의 저작권은 의회에 귀속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1. 단 체 명 :

2. 설립목적 :

3. 구성의원 :

| 연 번 | 성 명 | 서 명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신청인 : 대표자 ○ ○ ○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 연구활동 계획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                                                    |  |  |  |
|----------------|------|----------------------------------------------------|--|--|--|
| 연구단체명          |      |                                                    |  |  |  |
| 연구 내용          |      | 주 제                                                |  |  |  |
|                |      | 목 적                                                |  |  |  |
| 연구활동기간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연구방법 및<br>세부계획 |      | ( 별 첨 )                                            |  |  |  |
| 연구<br>활동비      | 총액   | 금 원 (₩ )                                           |  |  |  |
|                | 산출내역 | ※ 세부내역 별첨<br>- 자료 수집비, 여비, 급식비, 회의비, 강사료, 전문자문경비 등 |  |  |  |
| 기 타            |      |                                                    |  |  |  |

붙 임. 정책연구용역 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 대표자 ○ ○ ○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변경) 심의결과 통보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4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변경)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         |     |  |
|---------|-----|--|
| 연구단체명   |     |  |
| 대 표 자   |     |  |
| 연 구 주 제 |     |  |
| 심의결과    | 내 용 |  |
|         | 결 과 |  |
| 기 타     |     |  |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 (인)

의원연구단체 대표 귀하

[별지 제4호서식]

## 연구단체 의원 변동신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변동사항을 보고합니다.

|         |     |  |
|---------|-----|--|
| 연구단체명   |     |  |
| 변 동 의 원 | 당 초 |  |
|         | 변 경 |  |
| 변 동 일 자 |     |  |
| 변 동 사 유 |     |  |
| 기 타     |     |  |

년 월 일

신청인 : 대표자 ○ ○ ○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
|--------------------|----------|----------------------------------------------------|
| 연구단체명              |          |                                                    |
| 연구활동<br>계획<br>변경내용 | 당 초      |                                                    |
|                    | 변 경      |                                                    |
| 변경 사유              |          |                                                    |
| 연구방법 및<br>세부계획     |          | ( 별 첨 )                                            |
| 연구활동<br>비          | 총 액      | 금 원 (₩ )                                           |
|                    | 산출내<br>역 | ※ 세부내역 별첨<br>- 자료 수집비, 여비, 급식비, 회의비, 강사료, 전문자문경비 등 |
| 기 타                |          |                                                    |

년 월 일

신청인 : 대표자 ○ ○ ○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      |         |
|-----------|------|---------|
| 연구단체명     |      |         |
| 연구활동기간    |      |         |
| 연구주제      |      |         |
| 연구목적      |      |         |
| 연구<br>활동비 | 총 액  |         |
|           | 집행내역 | ( 불 임 ) |
| 비고        |      |         |

- 붙 임 1.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1부.  
2.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1부.  
3. 연구활동비 집행내역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 대표자 ○ ○ ○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 귀하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규정, 연구 결과물 공개까지 본 조례의 세부사항을 전면 개정함으로써 의원연구단체 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연구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연구단체 구성과 등록 및 존속기한 규정(제3조 및 제4조)
- 나.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 규정(제5조~제9조)
- 다. 연구단체 변동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규정(제10조)
- 라.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지원(제11조 및 제12조)
- 마. 연구활동계획 변경 규정 마련(제13조)
- 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및 공개 의무 규정(제14조)

## 고 시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6-70호

##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43호(2006.12.21.)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503호(2009.12.10.) 정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98호(2018.06.28.),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54호(2019.02.07.),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61호(2020.06.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189호(2023.05.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606호(2025.11.06.)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21-43호(2021.03.04.)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동작구고시 제2023-106호(2023.09.27.)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50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7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가. 종류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나. 명칭 :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가. 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270-3번지 일대
- 나. 면적 : 37,809㎡(측량) / 38,017㎡(공부)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명 :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정하)
- 나.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등용로14길 30, 2층201호(대방동)

###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가. 사업시행계획인가일(2021. 2. 26.)로부터 120개월

### 5.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최초) 2021. 2. 26. / (변경) 2026. 4. 30.

### 6. 변경의 사유 및 내용

- 가. 변경 사유 : 건축계획 변경 등 총회의결 사항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반영

## 나. 변경내용

## (1) 건축계획

| 구분            | 기정                              | 변경                              | 비고 |
|---------------|---------------------------------|---------------------------------|----|
| 대지면적          | 26,171.5㎡                       | 26,109.9㎡                       |    |
| 용 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 건축규모          | 지하5층/지상28층, 9개동<br>(최고높이 84.0m) | 지하5층/지상28층, 9개동<br>(최고높이 81.5m) |    |
| 건축면적<br>(건폐율) | 4,859.66㎡<br>(18.57%)           | 5,104.13㎡<br>(19.55%)           |    |
| 연면적<br>(용적률)  | 118,724.21㎡<br>(270.63%)        | 129,043.74㎡<br>(270.58%)        |    |
| 주차대수          | 957대                            | 1,079대                          |    |

## (2)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 구분 | 계   | 주택 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기준, ㎡) |      |       |       |     |      |       |      |
|----|-----|-----------------------|------|-------|-------|-----|------|-------|------|
|    |     | 임대                    |      |       |       | 분양  |      |       |      |
| 기정 | 세대수 | 소계                    | 40이하 | 40~50 | 50~60 | 소계  | 60이하 | 60~85 | 85초과 |
|    | 727 | 130                   | 54   | 58    | 18    | 597 | 253  | 304   | 40   |
| 변경 | 세대수 | 소계                    | 40이하 | 40~50 | 50~60 | 소계  | 60이하 | 60~85 | 85초과 |
|    | 727 | 130                   | 52   | 60    | 18    | 597 | 253  | 304   | 40   |

7.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 도로(6,940.7㎡), 공원(1,451.4㎡)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

9. 기타 관계도서: 생략 (동작구청 도시정비과 및 조합사무실에 비치)

수용 또는 사용합 토지 ·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



- 36 -

- 37 -



| 구민 연번  | 관리인 소재지  | 면적(㎡) |    |       | 이<br>상<br>부<br>속<br>물           | 주소                              | 종도<br>/<br>구도 | 동수<br>/<br>지구(지하) | 연면적   |                                 | 주소 | 소유면적 비율 |  | 관리인 | 비고<br>(기타구분) |
|--------|----------|-------|----|-------|---------------------------------|---------------------------------|---------------|-------------------|-------|---------------------------------|----|---------|--|-----|--------------|
|        |          | 공부상   | 법정 | 소유    |                                 |                                 |               |                   |       |                                 |    |         |  |     |              |
|        |          |       |    |       |                                 |                                 |               |                   | 연면적   | 소유                              |    |         |  |     |              |
| 수출 132 | 노정민동 203 | 3     |    | 103.0 |                                 | 관·외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등포 203-13. 3층 |               |                   | 23.2  | 관·외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등포 203-13. 3층 |    |         |  |     |              |
| 수출 132 | 노정민동 203 | 3     |    | 3.4   | 관·외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등포 203-13. 3층 |                                 |               |                   |       |                                 |    |         |  |     |              |
| 수출 133 | 노정민동 203 | 3     |    | 116.0 | 관·외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등포 203-13. 3층 |                                 |               |                   | 21.9  | 관·외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등포 203-13. 3층 |    |         |  |     |              |
| 수출 133 | 노정민동 203 | 3     |    | 3.4   | 관·외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등포 203-13. 3층 |                                 |               |                   |       |                                 |    |         |  |     |              |
| 수출 133 | 노정민동 203 | 3     |    | 3.22  | 관·외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등포 203-13. 3층 |                                 |               |                   |       |                                 |    |         |  |     |              |
| 수출 133 | 노정민동 203 | 3     |    | 106.0 | 관·외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등포 203-13. 3층 |                                 |               |                   | 33.5  | 관·외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등포 203-13. 3층 |    |         |  |     |              |
| 수출 133 | 노정민동 203 | 3     |    | 4.93  | 관·외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등포 203-13. 3층 |                                 |               |                   |       |                                 |    |         |  |     |              |
| 수출 133 | 노정민동 203 | 3     |    | 107.0 | 관·외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등포 203-13. 3층 |                                 |               |                   | 33.5  | 관·외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등포 203-13. 3층 |    |         |  |     |              |
| 수출 133 | 노정민동 203 | 3     |    | 4.93  | 관·외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등포 203-13. 3층 |                                 |               |                   |       |                                 |    |         |  |     |              |
| 수출 133 | 노정민동 203 | 3     |    | 108.0 | 관·외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등포 203-13. 3층 |                                 |               |                   | 21.9  | 관·외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등포 203-13. 3층 |    |         |  |     |              |
| 수출 133 | 노정민동 203 | 3     |    | 3.22  | 관·외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등포 203-13. 3층 |                                 |               |                   |       |                                 |    |         |  |     |              |
| 수출 134 | 노정민동 203 | 3     |    | 109.0 | 관·외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등포 203-13. 3층 |                                 |               |                   | 34.9  | 관·외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등포 203-13. 3층 |    |         |  |     |              |
| 수출 134 | 노정민동 203 | 3     |    | 5.78  | 관·외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등포 203-13. 3층 |                                 |               |                   |       |                                 |    |         |  |     |              |
| 수출 134 | 노정민동 203 | 3     |    | 5.72  | 관·외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등포 203-13. 3층 |                                 |               |                   |       |                                 |    |         |  |     |              |
| 수출 135 | 노정민동 203 | 3     |    | 110.0 | 관·외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등포 203-13. 3층 |                                 |               |                   | 31.4  | 관·외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등포 203-13. 3층 |    |         |  |     |              |
| 수출 135 | 노정민동 203 | 3     |    | 4.8   | 관·외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등포 203-13. 3층 |                                 |               |                   |       |                                 |    |         |  |     |              |
| 수출 136 | 노정민동 203 | 3     |    | 111.0 | 관·외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등포 203-13. 3층 |                                 |               |                   | 42.7  | 관·외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등포 203-13. 3층 |    |         |  |     |              |
| 수출 136 | 노정민동 203 | 3     |    | 7.02  | 관·외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등포 203-13. 3층 |                                 |               |                   |       |                                 |    |         |  |     |              |
| 수출 137 | 노정민동 203 | 3     |    | 112.0 | 관·외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등포 203-13. 3층 |                                 |               |                   | 64.4  | 관·외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등포 203-13. 3층 |    |         |  |     |              |
| 수출 138 | 노정민동 203 | 3     |    | 113.0 | 관·외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등포 203-13. 3층 |                                 |               |                   | 20.4  | 관·외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등포 203-13. 3층 |    |         |  |     |              |
| 수출 138 | 노정민동 203 | 3     |    | 3.01  | 관·외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등포 203-13. 3층 |                                 |               |                   |       |                                 |    |         |  |     |              |
| 수출 139 | 노정민동 203 | 3     |    | 124.0 | 관·외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등포 203-13. 3층 |                                 |               |                   | 28.8  | 관·외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등포 203-13. 3층 |    |         |  |     |              |
| 수출 139 | 노정민동 203 | 3     |    | 4.20  | 관·외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등포 203-13. 3층 |                                 |               |                   |       |                                 |    |         |  |     |              |
| 수출 140 | 노정민동 203 | 3     |    | 114.0 | 관·외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등포 203-13. 3층 |                                 |               |                   | 20.4  | 관·외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등포 203-13. 3층 |    |         |  |     |              |
| 수출 141 | 노정민동 203 | 3     |    | 115.0 | 관·외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등포 203-13. 3층 |                                 |               |                   | 13.42 | 관·외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등포 203-13. 3층 |    |         |  |     |              |
| 수출 142 | 노정민동 203 | 3     |    | 116.0 | 관·외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등포 203-13. 3층 |                                 |               |                   | 13.42 | 관·외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등포 203-13. 3층 |    |         |  |     |              |
| 수출 142 | 노정민동 203 | 3     |    | 2.22  | 관·외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등포 203-13. 3층 |                                 |               |                   |       |                                 |    |         |  |     |              |
| 수출 142 | 노정민동 203 | 3     |    | 1.97  | 관·외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등포 203-13. 3층 |                                 |               |                   |       |                                 |    |         |  |     |              |
| 수출 143 | 노정민동 203 | 3     |    | 117.0 | 관·외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등포 203-13. 3층 |                                 |               |                   | 16.6  | 관·외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등포 203-13. 3층 |    |         |  |     |              |
| 수출 143 | 노정민동 203 | 3     |    | 2.43  | 관·외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등포 203-13. 3층 |                                 |               |                   |       |                                 |    |         |  |     |              |
| 수출 144 | 노정민동 203 | 3     |    | 120.0 | 관·외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등포 203-13. 3층 |                                 |               |                   | 23.09 | 관·외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등포 203-13. 3층 |    |         |  |     |              |
| 수출 144 | 노정민동 203 | 3     |    | 3.39  | 관·외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등포 203-13. 3층 |                                 |               |                   |       |                                 |    |         |  |     |              |
| 수출 145 | 노정민동 203 | 3     |    | 118.0 | 관·외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등포 203-13. 3층 |                                 |               |                   | 16.55 | 관·외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등포 203-13. 3층 |    |         |  |     |              |
| 수출 145 | 노정민동 203 | 3     |    | 2.43  | 관·외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등포 203-13. 3층 |                                 |               |                   |       |                                 |    |         |  |     |              |
| 수출 146 | 노정민동 203 | 3     |    | 119.0 | 관·외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등포 203-13. 3층 |                                 |               |                   | 23.09 | 관·외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등포 203-13. 3층 |    |         |  |     |              |
| 수출 146 | 노정민동 203 | 3     |    | 3.39  | 관·외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등포 203-13. 3층 |                                 |               |                   |       |                                 |    |         |  |     |              |
| 수출 146 | 노정민동 203 | 3     |    | 3.10  | 관·외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등포 203-13. 3층 |                                 |               |                   | 16.6  | 관·외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등포 203-13. 3층 |    |         |  |     |              |

- 40 -

| 구분 | 연번  | 관리소재지 | 면적(m <sup>2</sup> ) |    |      | 이용 | 주소 | 지도<br>구도 | 동수<br>/ 층수 | 연면적 |    | 주소 | 건립종류 | 소재지소재지                                            |  | 비고<br>(기타구분) |
|----|-----|-------|---------------------|----|------|----|----|----------|------------|-----|----|----|------|---------------------------------------------------|--|--------------|
|    |     |       | 공부상                 | 법정 | 소유   | 상  |    |          |            | 연면적 | 소유 |    |      |                                                   |  |              |
| 수목 | 113 | 노정면   | 285                 | 3  | 2110 | 대  | 임* |          |            |     |    |    |      | 서울특별시 용마루구 용마루로 27-101<br>동(1201호, 신길동, 내성로(신길로)) |  |              |
| 수목 | 114 | 노정면   | 283                 | 3  | 2006 | 대  | 조* |          |            |     |    |    |      | 전라남도 영광군 용봉읍 용봉로 246, 한수원<br>사대 121호 1001호        |  |              |
| 수목 | 115 | 노정면   | 285                 | 3  | 1723 | 대  | 조* |          |            |     |    |    |      | 전라남도 영광군 용봉읍 용봉로 246, 한수원<br>사대 121호 1001호        |  |              |
| 수목 | 116 | 노정면   | 283                 | 3  | 2006 | 대  | 조* |          |            |     |    |    |      | 서울특별시 용마루구 용마루로 27-101<br>동(1201호, 신길동, 내성로(신길로)) |  |              |
| 수목 | 117 | 노정면   | 283                 | 3  | 2006 | 대  | 조* |          |            |     |    |    |      | 서울특별시 용마루구 용마루로 27-101<br>동(1201호, 신길동, 내성로(신길로)) |  |              |
| 수목 | 118 | 노정면   | 283                 | 3  | 2006 | 대  | 조* |          |            |     |    |    |      | 서울특별시 용마루구 용마루로 27-101<br>동(1201호, 신길동, 내성로(신길로)) |  |              |
| 수목 | 119 | 노정면   | 283                 | 3  | 2006 | 대  | 조* |          |            |     |    |    |      | 서울특별시 용마루구 용마루로 27-101<br>동(1201호, 신길동, 내성로(신길로)) |  |              |
| 수목 | 120 | 노정면   | 283                 | 3  | 2006 | 대  | 조* |          |            |     |    |    |      | 서울특별시 용마루구 용마루로 27-101<br>동(1201호, 신길동, 내성로(신길로)) |  |              |
| 수목 | 121 | 노정면   | 283                 | 3  | 2006 | 대  | 조* |          |            |     |    |    |      | 서울특별시 용마루구 용마루로 27-101<br>동(1201호, 신길동, 내성로(신길로)) |  |              |
| 수목 | 122 | 노정면   | 283                 | 3  | 2006 | 대  | 조* |          |            |     |    |    |      | 서울특별시 용마루구 용마루로 27-101<br>동(1201호, 신길동, 내성로(신길로)) |  |              |
| 수목 | 123 | 노정면   | 283                 | 3  | 2006 | 대  | 조* |          |            |     |    |    |      | 서울특별시 용마루구 용마루로 27-101<br>동(1201호, 신길동, 내성로(신길로)) |  |              |
| 수목 | 124 | 노정면   | 283                 | 3  | 2006 | 대  | 조* |          |            |     |    |    |      | 서울특별시 용마루구 용마루로 27-101<br>동(1201호, 신길동, 내성로(신길로)) |  |              |
| 수목 | 125 | 노정면   | 283                 | 3  | 2006 | 대  | 조* |          |            |     |    |    |      | 서울특별시 용마루구 용마루로 27-101<br>동(1201호, 신길동, 내성로(신길로)) |  |              |
| 수목 | 126 | 노정면   | 283                 | 3  | 2006 | 대  | 조* |          |            |     |    |    |      | 서울특별시 용마루구 용마루로 27-101<br>동(1201호, 신길동, 내성로(신길로)) |  |              |
| 수목 | 127 | 노정면   | 283                 | 3  | 2006 | 대  | 조* |          |            |     |    |    |      | 서울특별시 용마루구 용마루로 27-101<br>동(1201호, 신길동, 내성로(신길로)) |  |              |
| 수목 | 128 | 노정면   | 283                 | 3  | 2006 | 대  | 조* |          |            |     |    |    |      | 서울특별시 용마루구 용마루로 27-101<br>동(1201호, 신길동, 내성로(신길로)) |  |              |
| 수목 | 129 | 노정면   | 283                 | 3  | 2006 | 대  | 조* |          |            |     |    |    |      | 서울특별시 용마루구 용마루로 27-101<br>동(1201호, 신길동, 내성로(신길로)) |  |              |
| 수목 | 130 | 노정면   | 283                 | 3  | 2006 | 대  | 조* |          |            |     |    |    |      | 서울특별시 용마루구 용마루로 27-101<br>동(1201호, 신길동, 내성로(신길로)) |  |              |
| 수목 | 131 | 노정면   | 283                 | 3  | 2006 | 대  | 조* |          |            |     |    |    |      | 서울특별시 용마루구 용마루로 27-101<br>동(1201호, 신길동, 내성로(신길로)) |  |              |
| 수목 | 132 | 노정면   | 283                 | 3  | 2006 | 대  | 조* |          |            |     |    |    |      | 서울특별시 용마루구 용마루로 27-101<br>동(1201호, 신길동, 내성로(신길로)) |  |              |
| 수목 | 133 | 노정면   | 283                 | 3  | 2006 | 대  | 조* |          |            |     |    |    |      | 서울특별시 용마루구 용마루로 27-101<br>동(1201호, 신길동, 내성로(신길로)) |  |              |
| 수목 | 134 | 노정면   | 283                 | 3  | 2006 | 대  | 조* |          |            |     |    |    |      | 서울특별시 용마루구 용마루로 27-101<br>동(1201호, 신길동, 내성로(신길로)) |  |              |
| 수목 | 135 | 노정면   | 283                 | 3  | 2006 | 대  | 조* |          |            |     |    |    |      | 서울특별시 용마루구 용마루로 27-101<br>동(1201호, 신길동, 내성로(신길로)) |  |              |
| 수목 | 136 | 노정면   | 283                 | 3  | 2006 | 대  | 조* |          |            |     |    |    |      | 서울특별시 용마루구 용마루로 27-101<br>동(1201호, 신길동, 내성로(신길로)) |  |              |
| 수목 | 137 | 노정면   | 283                 | 3  | 2006 | 대  | 조* |          |            |     |    |    |      | 서울특별시 용마루구 용마루로 27-101<br>동(1201호, 신길동, 내성로(신길로)) |  |              |



| 구분 연번  | 관리 대상처   | 면적(㎡) |        |        | 이 용 상   | 주 소                                                                 | 용도 / 구조     | 동수 / 용수 (단위:㎡) | 인원비   |       | 주 소     | 관리종류                                                    | 소유권인원명 관리 |                       | 비고 (기타공과) |
|--------|----------|-------|--------|--------|---------|---------------------------------------------------------------------|-------------|----------------|-------|-------|---------|---------------------------------------------------------|-----------|-----------------------|-----------|
|        |          | 공부상   | 면적     | 소유     |         |                                                                     |             |                | 인원비   | 소유    |         |                                                         | 관리자       | 주 소                   |           |
| 수용 218 | 노영민동 284 | 5     |        | 6,789  | 감**     | 서울특별시 용인구 수지구동 25-1 (인도 1802호) (서울특별시 용인시 수지구 용인대동 25-1)            |             |                |       |       |         |                                                         |           |                       |           |
| 수용 219 | 노영민동 284 | 5     |        |        | 감**     | 서울 용인구 노영민동 284-5                                                   |             |                |       |       |         |                                                         |           |                       |           |
| 수용 220 | 노영민동 284 | 6     | 79.00  | 79.00  | 홍**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독성로22길 3, 101동 602호 (영배동, 영배하이명지)                         | 목조/주택       | 18 / 7/1       | 29.75 | 29.75 | 홍**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독성로22길 3, 101동 602호 (영배동, 영배하이명지)             |           |                       |           |
| 수용 221 | 노영민동 284 | 8     | 56.00  | 56.00  | 홍**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독성로22길 3, 101동 602호 (영배동, 영배하이명지)                         |             |                |       |       |         |                                                         |           |                       |           |
| 수용 222 | 노영민동 285 | 1     | 30.00  | 30.00  | 홍**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독성로22길 3, 101동 602호 (영배동, 영배하이명지)                         |             |                |       |       |         |                                                         |           |                       |           |
| 수용 223 | 노영민동 284 | 10    | 60.00  | 54.00  | 방**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 199번길 25, 401-54(01) 201-4호, 201-5호, 201-6호, 201-7호 |             |                |       |       |         |                                                         |           |                       |           |
| 수용 224 | 노영민동 284 | 11    | 101.00 | 24.55  | 단**     | 서울특별시 용인구 영평로 25, 106동 1209호 (상도동, 상도하이비)                           | 철근콘크리트 조상대형 | 18 / 4/1       | 587.7 | 68.06 | 단**     | 서울특별시 용인구 영평로 25, 106동 1209호 (상도동, 상도하이비)               |           |                       |           |
| 수용 225 | 노영민동 284 | 11    | 102.00 | 11.16  | 고** 외 1 | 서울특별시 강동구 오금로50길 50, 118동 1404호(215동, 201인도 1802호는 215)             |             |                | 30.52 | 30.52 | 고** 외 1 | 서울특별시 강동구 오금로50길 50, 118동 1404호(215동, 201인도 1802호는 215) | 국민은행      | 서울특별시 용인 남서로로 2(용인대동) |           |
| 수용 226 | 노영민동 284 | 11    | 201.00 | 24.55  | 단**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청량로 132, 337동 1702호 (영통동, 영통하이명지)                       |             |                | 61.85 | 68.06 | 감**     | 서울특별시 용인구 영평로 25, 106동 1209호 (상도동, 상도하이비)               |           |                       |           |
| 수용 227 | 노영민동 284 | 11    | 201.00 | 22.31  | 단**     | 서울특별시 용인구 영평로 25, 106동 1209호 (상도동, 상도하이비)                           |             |                | 34.03 | 34.03 | 단** 외 1 | 서울특별시 용인구 영평로 25, 106동 1209호 (상도동, 상도하이비)               |           |                       |           |
| 수용 228 | 노영민동 284 | 11    | 201.00 | 12.28  | 단** 외 1 | 서울특별시 용인구 영평로 25, 106동 1209호 (상도동, 상도하이비)                           |             |                | 34.03 | 34.03 | 단** 외 1 | 서울특별시 용인구 영평로 25, 106동 1209호 (상도동, 상도하이비)               |           |                       |           |
| 수용 229 | 노영민동 284 | 11    | 201.00 | 24.55  | 단**     | 경기도 수원시 수안구 각산로 229번길 102, 1002호(영통, 용인하이비)                         |             |                | 61.85 | 68.06 | 감**     | 서울특별시 용인구 영평로 25, 106동 1209호 (상도동, 상도하이비)               |           |                       |           |
| 수용 230 | 노영민동 284 | 11    | 402.00 | 22.31  | 단**     | 서울특별시 용인구 용성서로17길 11, 111호(상도동, 상도하이비)                              |             |                | 61.85 | 68.06 | 홍**     | 서울특별시 용인구 용성서로17길 11, 111호(상도동, 상도하이비)                  |           |                       |           |
| 수용 231 | 노영민동 284 | 11    | 41.00  | 12.28  | 단**     | 경기도 수원시 용문로 100, 100호 (용문하이비)                                       |             |                | 34.03 | 34.03 | 단**     | 서울특별시 용인구 용문로 100, 100호 (용문하이비)                         |           |                       |           |
| 수용 232 | 노영민동 284 | 11    | 41.00  | 12.28  | 단**     | 서울특별시 용인구 용문로 100, 100호 (용문하이비)                                     |             |                | 34.03 | 34.03 | 단**     | 서울특별시 용인구 용문로 100, 100호 (용문하이비)                         |           |                       |           |
| 수용 233 | 노영민동 284 | 11    | 41.00  | 12.28  | 단**     | 서울특별시 용인구 용문로 100, 100호 (용문하이비)                                     |             |                | 34.03 | 34.03 | 단**     | 서울특별시 용인구 용문로 100, 100호 (용문하이비)                         |           |                       |           |
| 수용 234 | 노영민동 284 | 22    | 내탁용    | 150.00 | 150.00  | 서울특별시 용인구 용문로 100, 100호 (용문하이비)                                     |             |                | 34.03 | 34.03 | 단**     | 서울특별시 용인구 용문로 100, 100호 (용문하이비)                         |           |                       |           |
| 수용 235 | 노영민동 284 | 22    | 내탁용    | 150.00 | 150.00  | 서울특별시 용인구 용문로 100, 100호 (용문하이비)                                     |             |                | 34.03 | 34.03 | 단**     | 서울특별시 용인구 용문로 100, 100호 (용문하이비)                         |           |                       |           |
| 수용 236 | 노영민동 284 | 24    | 내탁용    | 150.00 | 150.00  | 서울특별시 용인구 용문로 100, 100호 (용문하이비)                                     |             |                | 34.03 | 34.03 | 단**     | 서울특별시 용인구 용문로 100, 100호 (용문하이비)                         |           |                       |           |
| 수용 237 | 노영민동 284 | 24    | 내탁용    | 150.00 | 150.00  | 서울특별시 용인구 용문로 100, 100호 (용문하이비)                                     |             |                | 34.03 | 34.03 | 단**     | 서울특별시 용인구 용문로 100, 100호 (용문하이비)                         |           |                       |           |
| 수용 238 | 노영민동 284 | 25    | 내탁용    | 150.00 | 150.00  | 서울특별시 용인구 용문로 100, 100호 (용문하이비)                                     |             |                | 34.03 | 34.03 | 단**     | 서울특별시 용인구 용문로 100, 100호 (용문하이비)                         |           |                       |           |
| 수용 239 | 노영민동 284 | 26    | 내탁용    | 150.00 | 150.00  | 서울특별시 용인구 용문로 100, 100호 (용문하이비)                                     |             |                | 34.03 | 34.03 | 단**     | 서울특별시 용인구 용문로 100, 100호 (용문하이비)                         |           |                       |           |
| 수용 240 | 노영민동 284 | 61    | 내탁용    | 210.00 | 210.00  | 서울특별시 용인구 용문로 100, 100호 (용문하이비)                                     |             |                | 34.03 | 34.03 | 단**     | 서울특별시 용인구 용문로 100, 100호 (용문하이비)                         |           |                       |           |
| 수용 241 | 노영민동 285 | 2     | 내탁용    | 95.00  | 95.00   | 서울특별시 용인구 용문로 100, 100호 (용문하이비)                                     |             |                | 34.03 | 34.03 | 단**     | 서울특별시 용인구 용문로 100, 100호 (용문하이비)                         |           |                       |           |
| 수용 242 | 노영민동 286 | 1     | 내탁용    | 218.00 | 218.00  | 서울특별시 용인구 용문로 100, 100호 (용문하이비)                                     |             |                | 34.03 | 34.03 | 단**     | 서울특별시 용인구 용문로 100, 100호 (용문하이비)                         |           |                       |           |
| 수용 243 | 노영민동 286 | 2     | 내탁용    | 153.00 | 153.00  | 서울특별시 용인구 용문로 100, 100호 (용문하이비)                                     |             |                | 34.03 | 34.03 | 단**     | 서울특별시 용인구 용문로 100, 100호 (용문하이비)                         |           |                       |           |
| 수용 244 | 노영민동 286 | 6     | 내탁용    | 126.00 | 126.00  | 서울특별시 용인구 용문로 100, 100호 (용문하이비)                                     |             |                | 34.03 | 34.03 | 단**     | 서울특별시 용인구 용문로 100, 100호 (용문하이비)                         |           |                       |           |
| 수용 245 | 노영민동 287 | 4     | 내탁용    | 7.00   | 7.00    | 서울특별시 용인구 용문로 100, 100호 (용문하이비)                                     |             |                | 34.03 | 34.03 | 단**     | 서울특별시 용인구 용문로 100, 100호 (용문하이비)                         |           |                       |           |
| 수용 246 | 노영민동 288 | 3     | 내탁용    | 221.00 | 221.00  | 서울특별시 용인구 용문로 100, 100호 (용문하이비)                                     |             |                | 34.03 | 34.03 | 단**     | 서울특별시 용인구 용문로 100, 100호 (용문하이비)                         |           |                       |           |









| 구분 | 연번  | 관리 의 소 개 지 | 면적(㎡) |     |    | 이<br>유    | 주 소 | 용도<br>구 조 | 동수<br>/ 총수<br>(지상/지하) | 연면적 |    | 주 소 | 관리비 종류 | 성 형 | 주 소 | 비 고<br>(기타/주요) |
|----|-----|------------|-------|-----|----|-----------|-----|-----------|-----------------------|-----|----|-----|--------|-----|-----|----------------|
|    |     |            | 공부상   | 면적  | 소유 |           |     |           |                       | 전체  | 소유 |     |        |     |     |                |
| 수용 | 365 | 노정민용       | 294   | 193 |    | 지용(10.2호) |     |           |                       |     |    |     |        |     |     |                |
| 수용 | 366 | 노정민용       | 294   | 193 |    | 지용(10.2호) |     |           |                       |     |    |     |        |     |     |                |
| 수용 | 367 | 노정민용       | 294   | 193 |    | 지용(10.2호) |     |           |                       |     |    |     |        |     |     |                |
| 수용 | 368 | 노정민용       | 294   | 193 |    | 지용(10.2호) |     |           |                       |     |    |     |        |     |     |                |
| 수용 | 369 | 노정민용       | 294   | 193 |    | 지용(10.2호) |     |           |                       |     |    |     |        |     |     |                |
| 수용 | 370 | 노정민용       | 294   | 193 |    | 지용(10.2호) |     |           |                       |     |    |     |        |     |     |                |
| 수용 | 371 | 노정민용       | 294   | 193 |    | 지용(10.2호) |     |           |                       |     |    |     |        |     |     |                |
| 수용 | 372 | 노정민용       | 294   | 193 |    | 지용(10.2호) |     |           |                       |     |    |     |        |     |     |                |
| 수용 | 373 | 노정민용       | 294   | 193 |    | 지용(10.2호) |     |           |                       |     |    |     |        |     |     |                |
| 수용 | 374 | 노정민용       | 294   | 193 |    | 지용(10.2호) |     |           |                       |     |    |     |        |     |     |                |
| 수용 | 375 | 노정민용       | 294   | 193 |    | 지용(10.2호) |     |           |                       |     |    |     |        |     |     |                |
| 수용 | 376 | 노정민용       | 294   | 193 |    | 지용(10.2호) |     |           |                       |     |    |     |        |     |     |                |
| 수용 | 377 | 노정민용       | 294   | 193 |    | 지용(10.2호) |     |           |                       |     |    |     |        |     |     |                |
| 수용 | 378 | 노정민용       | 294   | 193 |    | 지용(10.2호) |     |           |                       |     |    |     |        |     |     |                |
| 수용 | 379 | 노정민용       | 294   | 193 |    | 지용(10.2호) |     |           |                       |     |    |     |        |     |     |                |
| 수용 | 380 | 노정민용       | 294   | 193 |    | 지용(10.2호) |     |           |                       |     |    |     |        |     |     |                |
| 수용 | 381 | 노정민용       | 294   | 193 |    | 지용(10.2호) |     |           |                       |     |    |     |        |     |     |                |
| 수용 | 382 | 노정민용       | 294   | 193 |    | 지용(10.2호) |     |           |                       |     |    |     |        |     |     |                |
| 수용 | 383 | 노정민용       | 294   | 193 |    | 지용(10.2호) |     |           |                       |     |    |     |        |     |     |                |
| 수용 | 384 | 노정민용       | 294   | 193 |    | 지용(10.2호) |     |           |                       |     |    |     |        |     |     |                |
| 수용 | 385 | 노정민용       | 294   | 193 |    | 지용(10.2호) |     |           |                       |     |    |     |        |     |     |                |
| 수용 | 386 | 노정민용       | 294   | 193 |    | 지용(10.2호) |     |           |                       |     |    |     |        |     |     |                |
| 수용 | 387 | 노정민용       | 294   | 193 |    | 지용(10.2호) |     |           |                       |     |    |     |        |     |     |                |
| 수용 | 388 | 노정민용       | 294   | 193 |    | 지용(10.2호) |     |           |                       |     |    |     |        |     |     |                |
| 수용 | 389 | 노정민용       | 294   | 193 |    | 지용(10.2호) |     |           |                       |     |    |     |        |     |     |                |
| 수용 | 390 | 노정민용       | 294   | 193 |    | 지용(10.2호) |     |           |                       |     |    |     |        |     |     |                |

- 49 -

| 구분 연번  | 관리 의 소 개 지 | 면적(㎡) |     |        | 이 수 상  | 주 소    | 지도 / 구 조 | 건 조 물 |          |       | 소유권의자와 권리 |        |        | 비고<br>(기타관리) |                                    |                                  |                                  |                                  |
|--------|------------|-------|-----|--------|--------|--------|----------|-------|----------|-------|-----------|--------|--------|--------------|------------------------------------|----------------------------------|----------------------------------|----------------------------------|
|        |            | 면적    | 평면  | 소유     |        |        |          | 종 류   | 종 수      | 연면적   | 소유        | 주 소    | 권리의유래  |              | 영용                                 |                                  |                                  |                                  |
|        |            |       |     |        |        |        |          |       |          |       |           |        |        |              |                                    | 주 소                              |                                  |                                  |
| 수용 416 | 노정동        | 294   | 321 | 69.00  | 69.00  | 66.00  | 66.00    | 4     | 박**      | 연외조수역 | 1층 / 1가   | 36.36  | 36.36  | 박**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원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 수용 417 | 노정동        | 294   | 322 | 71.00  | 71.00  | 71.00  | 71.00    | 4     | 김**      | 연외조수역 | 1층 / 1가   | 42.98  | 42.98  | 김**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 수용 418 | 노정동        | 294   | 325 | 135.00 | 135.00 | 135.00 | 135.00   | 4     | 김**      | 연외조수역 | 1층 / 2가   | 194.94 | 194.94 | 김**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 수용 419 | 노정동        | 294   | 326 | 132.00 | 132.00 | 132.00 | 132.00   | 4     | 홍**      | 연외조수역 | 1층 / 2가   | 160.56 | 160.56 | 홍**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 수용 420 | 노정동        | 294   | 329 | 96.00  | 96.00  | 96.00  | 96.00    | 4     | 박** 외 1인 | 연외조수역 | 1층 / 3가   | 168.52 | 168.52 | 박** 외 1인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원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 수용 421 | 노정동        | 294   | 461 | 101.00 | 302.00 | 302.00 | 37.02    | 4     | 정영웅(주)   | 연외조수역 | 1층 / 4가   | 543.59 | 66.02  | 정영웅(주)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원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 수용 421 | 노정동        | 294   | 461 | 201.00 | 37.02  | 37.02  | 37.02    | 4     | 정영웅(주)   | 연외조수역 | 1층 / 4가   | 66.02  | 66.02  | 정영웅(주)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원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 수용 421 | 노정동        | 294   | 461 | 202.00 | 42.16  | 42.16  | 42.16    | 4     | 정영웅(주)   | 연외조수역 | 1층 / 4가   | 74.55  | 74.55  | 정영웅(주)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원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 수용 422 | 노정동        | 294   | 461 | 102.00 | 42.16  | 42.16  | 42.16    | 4     | 정영웅(주)   | 연외조수역 | 1층 / 4가   | 74.55  | 74.55  | 정영웅(주)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원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 수용 422 | 노정동        | 294   | 461 | 301.00 | 13.71  | 13.71  | 13.71    | 4     | 정영웅(주)   | 연외조수역 | 1층 / 4가   | 23.28  | 23.28  | 정영웅(주)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원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 수용 422 | 노정동        | 294   | 461 | 301.00 | 13.72  | 13.72  | 13.72    | 4     | 정영웅(주)   | 연외조수역 | 1층 / 4가   | 23.28  | 23.28  | 정영웅(주)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원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 수용 423 | 노정동        | 294   | 461 | 302.00 | 37.14  | 37.14  | 37.14    | 4     | 정영웅(주)   | 연외조수역 | 1층 / 4가   | 66.24  | 66.24  | 정영웅(주)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원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 수용 423 | 노정동        | 294   | 461 | 401.00 | 44.66  | 44.66  | 44.66    | 4     | 정영웅(주)   | 연외조수역 | 1층 / 4가   | 81.39  | 81.39  | 정영웅(주)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원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 수용 424 | 노정동        | 294   | 461 | 121.00 | 25.00  | 25.00  | 25.00    | 4     | 정영웅(주)   | 연외조수역 | 1층 / 4가   | 62.06  | 62.06  | 정영웅(주)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원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 수용 427 | 노정동        | 294   | 503 | 121.00 | 25.00  | 25.00  | 25.00    | 4     | 정영웅(주)   | 연외조수역 | 1층 / 4가   | 62.06  | 62.06  | 정영웅(주)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원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 수용 427 | 노정동        | 294   | 503 | 45.36  | 45.36  | 45.36  | 45.36    | 4     | 정영웅(주)   | 연외조수역 | 1층 / 4가   | 45.36  | 45.36  | 정영웅(주)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원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 수용 427 | 노정동        | 294   | 503 | 45.36  | 45.36  | 45.36  | 45.36    | 4     | 정영웅(주)   | 연외조수역 | 1층 / 4가   | 45.36  | 45.36  | 정영웅(주)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원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 수용 427 | 노정동        | 294   | 503 | 30.25  | 30.25  | 30.25  | 30.25    | 4     | 정영웅(주)   | 연외조수역 | 1층 / 4가   | 30.25  | 30.25  | 정영웅(주)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원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 수용 428 | 노정동        | 294   | 518 | 22.00  | 22.00  | 22.00  | 22.00    | 4     | 정영웅(주)   | 연외조수역 | 1층 / 4가   | 22.00  | 22.00  | 정영웅(주)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원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 수용 428 | 노정동        | 294   | 518 | 16.50  | 16.50  | 16.50  | 16.50    | 4     | 정영웅(주)   | 연외조수역 | 1층 / 4가   | 16.50  | 16.50  | 정영웅(주)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원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 수용 429 | 노정동        | 294   | 515 | 204.00 | 31.00  | 31.00  | 31.00    | 4     | 정영웅(주)   | 연외조수역 | 1층 / 4가   | 291.3  | 15.42  | 정영웅(주)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원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 수용 429 | 노정동        | 294   | 515 | 201.00 | 10.79  | 10.79  | 10.79    | 4     | 정영웅(주)   | 연외조수역 | 1층 / 4가   | 15.42  | 15.42  | 정영웅(주)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원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 수용 430 | 노정동        | 294   | 515 | 202.00 | 21.56  | 21.56  | 21.56    | 4     | 정영웅(주)   | 연외조수역 | 1층 / 4가   | 30.82  | 30.82  | 정영웅(주)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원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 수용 431 | 노정동        | 294   | 515 | 203.00 | 6.23   | 6.23   | 6.23     | 4     | 정영웅(주)   | 연외조수역 | 1층 / 4가   | 6.23   | 6.23   | 정영웅(주)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원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 수용 431 | 노정동        | 294   | 515 | 203.00 | 6.23   | 6.23   | 6.23     | 4     | 정영웅(주)   | 연외조수역 | 1층 / 4가   | 6.23   | 6.23   | 정영웅(주)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원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 수용 432 | 노정동        | 294   | 515 | 204.00 | 12.43  | 12.43  | 12.43    | 4     | 정영웅(주)   | 연외조수역 | 1층 / 4가   | 12.43  | 12.43  | 정영웅(주)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원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 수용 433 | 노정동        | 294   | 515 | 301.00 | 66.00  | 66.00  | 66.00    | 4     | 정영웅(주)   | 연외조수역 | 1층 / 4가   | 94.60  | 94.60  | 정영웅(주)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원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 수용 434 | 노정동        | 294   | 515 | 지중조수역  | 10.79  | 10.79  | 10.79    | 4     | 정영웅(주)   | 연외조수역 | 1층 / 4가   | 15.42  | 15.42  | 정영웅(주)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원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 수용 434 | 노정동        | 294   | 515 | 지중조수역  | 10.79  | 10.79  | 10.79    | 4     | 정영웅(주)   | 연외조수역 | 1층 / 4가   | 15.42  | 15.42  | 정영웅(주)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원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 수용 434 | 노정동        | 294   | 515 | 지중조수역  | 10.79  | 10.79  | 10.79    | 4     | 정영웅(주)   | 연외조수역 | 1층 / 4가   | 15.42  | 15.42  | 정영웅(주)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원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 수용 435 | 노정동        | 294   | 515 | 지중조수역  | 21.56  | 21.56  | 21.56    | 4     | 정영웅(주)   | 연외조수역 | 1층 / 4가   | 30.82  | 30.82  | 정영웅(주)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원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 수용 436 | 노정동        | 294   | 515 | 지중조수역  | 24.87  | 24.87  | 24.87    | 4     | 정영웅(주)   | 연외조수역 | 1층 / 4가   | 35.55  | 35.55  | 정영웅(주)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원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 수용 437 | 노정동        | 294   | 516 | 197.12 | 206.00 | 37.00  | 37.00    | 4     | 정영웅(주)   | 연외조수역 | 1층 / 4가   | 48.78  | 48.78  | 정영웅(주)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원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 수용 438 | 노정동        | 294   | 516 | 198.00 | 40.39  | 40.39  | 40.39    | 4     | 정영웅(주)   | 연외조수역 | 1층 / 4가   | 48.78  | 48.78  | 정영웅(주)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원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 수용 439 | 노정동        | 294   | 516 | 297.12 | 40.39  | 40.39  | 40.39    | 4     | 정영웅(주)   | 연외조수역 | 1층 / 4가   | 48.78  | 48.78  | 정영웅(주)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원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 수용 440 | 노정동        | 294   | 516 | 298.00 | 40.39  | 40.39  | 40.39    | 4     | 정영웅(주)   | 연외조수역 | 1층 / 4가   | 48.78  | 48.78  | 정영웅(주)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원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 수용 441 | 노정동        | 294   | 516 | 지중조수역  | 23.23  | 23.23  | 23.23    | 4     | 정영웅(주)   | 연외조수역 | 1층 / 4가   | 28.78  | 28.78  | 정영웅(주)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원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 수용 442 | 노정동        | 294   | 516 | 지중조수역  | 23.23  | 23.23  | 23.23    | 4     | 정영웅(주)   | 연외조수역 | 1층 / 4가   | 28.78  | 28.78  | 정영웅(주)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원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서울특별시 용두구 영동로294번길 23, 2층 (지하1층) |

| 구분 | 연번  | 관리 의 소재지 | 면적(m <sup>2</sup> ) |          |          | 이 용 | 주 소 | 용도 / 구조                                            | 용수 / 용수 (단위:리터) | 연면적   |       | 주 소 | 관리자                                                | 비고 |
|----|-----|----------|---------------------|----------|----------|-----|-----|----------------------------------------------------|-----------------|-------|-------|-----|----------------------------------------------------|----|
|    |     |          | 공부상                 | 면적       | 소유       | 상   |     |                                                    |                 | 연면적   | 소유    |     |                                                    |    |
| 수용 | 443 | 노정현동 294 | 517                 | 22.00    | 22.00    | 단   | 도** | 서울시종로구 신당로 30, 1동 402호 (면적: 11.00㎡, 용수: 1.00리터)    |                 |       |       |     |                                                    |    |
| 수용 | 444 | 노정현동 294 | 527                 | 22.00    | 22.00    | 단   | 도**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당로 30, 1동 402호 (면적: 11.00㎡, 용수: 1.00리터) | 1동 / 271        | 16.63 | 16.63 | 도**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당로 30, 1동 402호 (면적: 11.00㎡, 용수: 1.00리터) |    |
| 수용 | 445 | 노정현동 294 | 538                 | 22.00    | 22.00    | 단   | 도**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당로 30, 1동 402호 (면적: 11.00㎡, 용수: 1.00리터) | 1동 / 271        | 16.63 | 16.63 | 도**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당로 30, 1동 402호 (면적: 11.00㎡, 용수: 1.00리터) |    |
| 수용 | 446 | 노정현동 270 | 5                   | 106.00   | 106.00   | 도   | 도**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당로 30, 1동 402호 (면적: 11.00㎡, 용수: 1.00리터) |                 |       |       |     |                                                    |    |
| 수용 | 447 | 노정현동 270 | 7                   | 111.00   | 111.00   | 도   | 도**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당로 30, 1동 402호 (면적: 11.00㎡, 용수: 1.00리터) |                 |       |       |     |                                                    |    |
| 수용 | 448 | 노정현동 273 | 19                  | 321.00   | 321.00   | 단   | 도**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당로 30, 1동 402호 (면적: 11.00㎡, 용수: 1.00리터) |                 |       |       |     |                                                    |    |
| 수용 | 449 | 노정현동 274 | 39                  | 258.00   | 258.00   | 도   | 도**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당로 30, 1동 402호 (면적: 11.00㎡, 용수: 1.00리터) |                 |       |       |     |                                                    |    |
| 수용 | 450 | 노정현동 274 | 44                  | 88.00    | 88.00    | 도   | 도**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당로 30, 1동 402호 (면적: 11.00㎡, 용수: 1.00리터) |                 |       |       |     |                                                    |    |
| 수용 | 451 | 노정현동 275 | 19                  | 27.00    | 27.00    | 도   | 도**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당로 30, 1동 402호 (면적: 11.00㎡, 용수: 1.00리터) |                 |       |       |     |                                                    |    |
| 수용 | 452 | 노정현동 284 | 45                  | 1,302.00 | 1,302.00 | 도   | 도**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당로 30, 1동 402호 (면적: 11.00㎡, 용수: 1.00리터) |                 |       |       |     |                                                    |    |
| 수용 | 453 | 노정현동 284 | 48                  | 294.00   | 294.00   | 도   | 도**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당로 30, 1동 402호 (면적: 11.00㎡, 용수: 1.00리터) |                 |       |       |     |                                                    |    |
| 수용 | 454 | 노정현동 286 | 14                  | 34.00    | 34.00    | 도   | 도**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당로 30, 1동 402호 (면적: 11.00㎡, 용수: 1.00리터) |                 |       |       |     |                                                    |    |
| 수용 | 455 | 노정현동 287 | 8                   | 1.00     | 1.00     | 단   | 도**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당로 30, 1동 402호 (면적: 11.00㎡, 용수: 1.00리터) |                 |       |       |     |                                                    |    |
| 수용 | 456 | 노정현동 275 | 18                  | 96.00    | 96.00    | 단   | 도**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당로 30, 1동 402호 (면적: 11.00㎡, 용수: 1.00리터) |                 |       |       |     |                                                    |    |
| 수용 | 457 | 노정현동 44  | 120                 | 777.00   | 777.00   | 단   | 도**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당로 30, 1동 402호 (면적: 11.00㎡, 용수: 1.00리터) |                 |       |       |     |                                                    |    |
| 수용 | 458 | 노정현동 272 | 5                   | 26.00    | 26.00    | 단   | 도**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당로 30, 1동 402호 (면적: 11.00㎡, 용수: 1.00리터) |                 |       |       |     |                                                    |    |
| 수용 | 459 | 노정현동 272 | 6                   | 47.00    | 47.00    | 단   | 도**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당로 30, 1동 402호 (면적: 11.00㎡, 용수: 1.00리터) |                 |       |       |     |                                                    |    |
| 수용 | 460 | 노정현동 272 | 8                   | 182.00   | 182.00   | 단   | 도**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당로 30, 1동 402호 (면적: 11.00㎡, 용수: 1.00리터) |                 |       |       |     |                                                    |    |
| 수용 | 461 | 노정현동 272 | 9                   | 23.00    | 23.00    | 단   | 도**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당로 30, 1동 402호 (면적: 11.00㎡, 용수: 1.00리터) |                 |       |       |     |                                                    |    |
| 수용 | 462 | 노정현동 272 | 13                  | 89.00    | 89.00    | 단   | 도**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당로 30, 1동 402호 (면적: 11.00㎡, 용수: 1.00리터) |                 |       |       |     |                                                    |    |
| 수용 | 463 | 노정현동 272 | 16                  | 1.00     | 1.00     | 단   | 도**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당로 30, 1동 402호 (면적: 11.00㎡, 용수: 1.00리터) |                 |       |       |     |                                                    |    |
| 수용 | 464 | 노정현동 272 | 18                  | 7.00     | 7.00     | 단   | 도**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당로 30, 1동 402호 (면적: 11.00㎡, 용수: 1.00리터) |                 |       |       |     |                                                    |    |
| 수용 | 465 | 노정현동 272 | 23                  | 13.00    | 13.00    | 단   | 도**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당로 30, 1동 402호 (면적: 11.00㎡, 용수: 1.00리터) |                 |       |       |     |                                                    |    |
| 수용 | 466 | 노정현동 272 | 27                  | 32.00    | 32.00    | 단   | 도**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당로 30, 1동 402호 (면적: 11.00㎡, 용수: 1.00리터) |                 |       |       |     |                                                    |    |
| 수용 | 467 | 노정현동 272 | 28                  | 75.00    | 75.00    | 단   | 도**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당로 30, 1동 402호 (면적: 11.00㎡, 용수: 1.00리터) |                 |       |       |     |                                                    |    |
| 수용 | 468 | 노정현동 275 | 14                  | 13.00    | 13.00    | 단   | 도**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당로 30, 1동 402호 (면적: 11.00㎡, 용수: 1.00리터) |                 |       |       |     |                                                    |    |
| 수용 | 469 | 노정현동 294 | 294                 | 20.00    | 20.00    | 단   | 도**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당로 30, 1동 402호 (면적: 11.00㎡, 용수: 1.00리터) |                 |       |       |     |                                                    |    |
| 수용 | 470 | 노정현동 276 | 10                  | 40.00    | 40.00    | 단   | 도**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당로 30, 1동 402호 (면적: 11.00㎡, 용수: 1.00리터) |                 |       |       |     |                                                    |    |
| 수용 | 471 | 노정현동 276 | 11                  | 17.00    | 17.00    | 단   | 도**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당로 30, 1동 402호 (면적: 11.00㎡, 용수: 1.00리터) |                 |       |       |     |                                                    |    |
| 수용 | 472 | 노정현동 276 | 21                  | 7.00     | 7.00     | 단   | 도**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당로 30, 1동 402호 (면적: 11.00㎡, 용수: 1.00리터) |                 |       |       |     |                                                    |    |
| 수용 | 473 | 노정현동 275 | 3                   | 13.00    | 13.00    | 단   | 도**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당로 30, 1동 402호 (면적: 11.00㎡, 용수: 1.00리터) |                 |       |       |     |                                                    |    |
| 수용 | 474 | 노정현동 294 | 544                 | 937.00   | 937.00   | 도   | 도**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당로 30, 1동 402호 (면적: 11.00㎡, 용수: 1.00리터) |                 |       |       |     |                                                    |    |
| 수용 | 475 | 노정현동 294 | 545                 | 2,103.00 | 2,103.00 | 도   | 도**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당로 30, 1동 402호 (면적: 11.00㎡, 용수: 1.00리터) |                 |       |       |     |                                                    |    |
| 수용 | 476 | 노정현동 44  | 28                  | 66.00    | 66.00    | 단   | 도**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당로 30, 1동 402호 (면적: 11.00㎡, 용수: 1.00리터) |                 |       |       |     |                                                    |    |
| 수용 | 477 | 노정현동 284 | 59                  | 757      | 757      | 단   | 도**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당로 30, 1동 402호 (면적: 11.00㎡, 용수: 1.00리터) |                 |       |       |     |                                                    |    |

- 52 -